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0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임오경·이기헌·김재원

박 정・한민수・박수현

임미애 · 강유정 · 윤후덕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정보 등) ①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	
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	
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
	<u>한 사항</u>
<u>15.</u> (생 략)	<u>16.</u> (현행 제15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	등) ①
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 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 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략)

② (생략)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저 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 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1. ~ 6. (현행과 같음)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u>1. 077671 大 7 977年文</u>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사항

- 1. ~ 12. (현행과 같음)
-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
	<u>한 사항</u>
<u>13.</u> (생 략)	<u>14.</u>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